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41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7.12.01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4.19

evesaver1111@naver.com

EYESAVER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아이세이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아이세이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 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52, 3층 306, 307호(BYC 수완 비스타 오피스텔] [대표전화 062)454-0500]

[FAX 062)454-0501]

[가맹사업팀 062)454-05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이 N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EYESAVER	광주시 광산구 장신로52,306,307호(장덕동,BYC수완비스타오피스텔)						
(주)아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				대표팩스번호		
세이버	2016.08.26	2016.08.26 심재후 062)454-0500 062)4		062)454-0501				
	법인등록번호	200111-0470941	사업자등록번호 690-87-00406			-87-00406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광주/	광주시 광산구 장신로52,306,307호				
사용인	심재후	EVECAVED	(장덕	동,BYC수완비스타오	그피스텔)			
(임원)	실계구	EYESAVER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재후	062)454-0500	062)454-0501			
관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KOREAF	AIK IKADE ME광추	시 광산구 장신로52,3	806,307호			
사용인	최근 기	EXECAMED	(장덕	동,BYC수완비스타오	그피스텔)			
(임원)	황루시	EYESAVER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재후	062)454-0500	062)454-05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EYESAVER]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EYESAVER	
상 호	EYESAVER OO점	
상 표(서비스 표)	ELEYESAVER	등록번호:4013931180000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401445058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026,502	786,117	240,385	911,026	1,933	35,918
2022	1,074,762	815,798	259,964	1,256,703	2,957	18,579
2023	959,325	674,716	284,608	1,700,594	14,924	25,644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완년여구] 이름		선 역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심재후	대표이사	2016.08~현재	대표이사	총괄	
관련임원	황루시	이사	2016.08~현재	이사	가맹점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八台	상근	비상근	주천 구(경 <i>)</i>
2023년 12월 31일	2	_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EYESAVER]와 동일 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 일(가맹본부의 사용기간)
EYESAVER (상표권)	K 영업지역 내사용	DREA FAIR TRADE 등록일자 :2018.09.03	MEDIATION AGENO 등록번호 :4013931180000	Y 주식회사 아이세이버 (상동)	2028.09.03
eyesaver	영업지역 내사용	2019.02.11	4014450610000	주식회사 아이세이버	2029.02.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가맹본부의 [EYESAVER] 가맹사업 현황

1. [EYESAVER]을 시작한 날 :2016.07.25

(직영점을 시작한 날:)

2. [EYESAVER]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이세이버	EYESAVER	심재후	2016.08 2020.08.02	85, 2증(운남농)
(주)아이세이버	EYESAVER	심재후		광주 광산구 장신로52, 3층 306, 307호(BYC 수완 비스타 오피스텔)

3. [EYESAVER] 업종

영업표지	업종					
FVFSAVFR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EYESAVER	안경	안경, 렌즈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EYESAVER]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7) Cd	지역 2021.12.31			DTDANE	2022.12.3			2023.12.3	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8	_	22	22	_	23	23	0
서울	1	1	_	1	1	_	1	1	0
부산	1	1	_	1	1	_	1	1	0
대구	0	0	_	0	0	_	0	0	0
인천	1	1	_	2	2	_	2	2	0
광주	5	5	_	9	9	_	10	10	0
대전	1	1	_	1	1	_	1	1	0
울산	1	1	_	1	1	_	1	1	0
세종	0	0	_	0	0	_	0	0	0
경기	2	2	_	2	2	_	2	2	0
강원	0	0	_	0	0	_	0	0	0
충북	0	0	_	0	0	_	0	0	0
충남	0	0	_	0	0	_	0	0	0
전북	3	3	_	3	3	_	3	3	0
전남	3	3	_	2	2	_	2	2	0
경북	0	0	=	0	0	=	0	0	0
경남	0	0	_	0	0	_	0	0	0
제주	0	0	_	0	0	_	0	0	0

5. 최근 3년간 [EYESAVER] 가맹점 수(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7	2	1	0	0	18
2022	18	5	1	0	0	22
2023	22	1	0	0	0	23

6. [EYESAVER]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 가맹본부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EYESAVER]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 여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3	401,238	8,280	867,673	17,016	153,815	2,337	21곳
서울	1	해당없음	-	_	-	_	_	5곳미만
부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미만
대구	0	해당없음	_	-	-	_	_	
인천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미만
광주	10	373,278	8,750	757,375	15,148	159,697	5,244	9곳
대전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미만
울산	1	해당없음	-	_	-	_	_	5곳미만
세종	0	해당없음	_	_	_	_	_	
경기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미만
강원	0	해당없음	_	_	_	_	_	
충북	0	해당없음	_	_	_	_	_	
충남	0	해당없음	_	_	_	_	_	

전북	3	해당없음	-	-	_	_	_	5곳미만
전남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미만
경북	0	해당없음	-	_	_	_	_	
경남	0	해당없음	-	_	_	_	-	
제주	0	해당없음	-	_	_	_	_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의 세이버키퍼(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EYESAVER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EYESAVER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아이세이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3	1,43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2년]에 [EYESAVER]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28]쪽을 참고 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출 비	용(단위: 천원	, 부가세	
구분	수단	기간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2,850		
광고		12,85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 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상무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7 금호쌍용	062)383-055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아이세이버	가맹본부
피 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5,500천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맹금예치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협의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EYESAVER]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었음	없음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LODEA			
가입비	7,7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ON AGENCY 가맹점이 개점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가맹점 개 점 전에 본 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 가입비는 위약금으로 함.
교육비	3,3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 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
가입비	7,700
교육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면적:99m²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49,700		<u> </u>		
인테리어 및 간판 (점포내장공사)	(협력업 체) T	73,700 DREA FAI	2,457 R TRADE	착수금 50% (계약 체결 후 4일) 중도금 30% (공사 시작 후 10일) 잔금 20% (공사 마감일)	공사 전 계약 취소	33㎡ 기준 (3.3㎡당 2,200천원 간판:7,700포함
필수설비 (정착물)	(협력업 체)	66,000	2,200	설비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설치 전 계약 취소	시설물 정착 시 반품 및 반환불가
최초공급 상품비용	가맹본부	110,000		개점 10일 이전	상품 미 공급 시	
기타 개점에 필요한 비용	_	_	_	-	_	_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의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2$ 당 330천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2일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입지선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상권특성 및 주요시설 파악 →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 상권 및 입지분석은 전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책임 하에 선정되며 EYESAVER 가맹본부는 조언 및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요구 할 수 있음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안경사 자격증 소유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YESAVER]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물품내역은 당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물품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액의 50% 분담 (가맹점 각각의 부 담은 매출액에 따 라 분담)	분 담 내 역 을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광고가 시 행 되었을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달라짐	분 담 내 역 을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판족맹사	판촉행사 가 시행 되었을 시	
계속가맹금 (로열티)	가맹본부	文章 440 KOREAFAIR TRA	가라주 매월10일 DE MEDIATION	가맹본부 의 귀책사유 로 인한 계약해지 인 경우	가맹점사 업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계약해지 인 경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비용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보 후 1주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	(협력업 체)	실제 소요되는비용	간판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선 비용	(협력업 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	_	_	금전지급 기한

다음 날 부터	경과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정품목, 위생상태 등 조사	1회/월	문의: 가맹사업부 062)454-0500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회/분기별	문의: 가맹사업부 062)454-050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 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 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EYESAVER]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2,2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25]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본부"의 지식재산인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간 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 2.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나 상표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 및 해지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5.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구입한 상품 또는 제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또는 반품 요청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궁정거레조정의

7.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F-종료 A이후에도 계속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EYESAVER]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 가맹금 수취여부
부동산	해당 없음	the transfer of the second	Denni B. D. Streen Karler, E. J. G. G. Walter, R. W. E. K.	Manager Chance S. N. Manager N. N.	
설 비	검안세트 외 약 15종		권유	(협력업체)	X
FA 0	인테리어	99 m²	권유	(협력업체)	X
용 역	간판		권유	(협력업체)	X
	고굴절 렌즈				
	안경테			가맹본부 및	
원·부재료	안경렌즈	박스	강제	소모비젼 외	О
1 / / / / /	썬글라스	1,—	0 2 11	약 30업체	O
	고글				
	콘텍즈 렌즈 등				
상품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EYESAVER]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EYESAVER]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EYESAVER]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 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1회 위반: 구두 경고	
시거 시거리 미 버리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안경, 안경테 및 부자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지 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느 다르 가매전에 곳	시정요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NAGENCY

Amy Mand A Hand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 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안경	E-mail 공지	개별통지	
안경테 및 부자재	E-mail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u> </u>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전문 가맹사업	EYESAVER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EYESAVER"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EYESAVER]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단위: %)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의 기간

[EYESAVER]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⑤, 아니오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 🚾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1항의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1항의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5조제1항의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5조제1항의4
○ [EYESAVER]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제45조제1항의5

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 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지규정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7조2항
변경 사용하는 경우	7117528
2.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권 범위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	제9조
이 영업표지를 변경하거나 허용 범위 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
3.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제14조제5항
않는 경우	1112400
4.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20조1항
5. 가맹점사업자가 교육 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교육비의 지급	제22조
을 지체하는 경우	2
6.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을 위반한 경우	제24조
7. 가맹점사업자가 다수가 동의하는 광고계획에 동참하지 않거나 광고비의	제25조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11/2033
8. 가맹점사업자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전단,카탈로그 등	
을 자체 제작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제26조
되는 경우	1000
9.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제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불량, 손상된 상품 및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및 제4항
1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1조
11.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12.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의 준수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제33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상품 및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거나 품질검사에 불응 또는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품질관리 기준에	제34조
위반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15.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의 결제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제36조
16. 가맹점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상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1)00.7
가맹본부가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38조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서비스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2항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양도 행위를 한 경우제42조 제1항20.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제5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제46조제2
	경우	항의1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46조제2
	기 8 급여 답이가 한 명단 위표 기 표가 가고 8 으로 이번 18기 18기	항의2
Ò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제46조제2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항의3
Ó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 <mark>령</mark>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46조제2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항의4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제46제2항
	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	의5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	제46조제2
	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	항의6
	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2.2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6조제2
		항의7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제46조제2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항의8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6조제3
\Box	기 6 급시 답시기 경경된 시대 없이 단독에서 / 현 역경 경험을 중단한 경구	세40조세3

항의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과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9조3항
○ "EYESAVER"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49조3항

재 조 정 절 차	동 의 절 차
계약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효력 발생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에는 수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환매제도[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14 7 = 12 = 1	문의 : 가맹사업부 062)454-050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 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 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 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교육 → 기존 계약 승계	교육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 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 (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대리운영 AGENCY	대리운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EYESAVER]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안경, 렌즈 등 기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사업부 062)454-05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EYESAVER]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09:30~21:00	주 7일. 월 30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062)454,0500
		062)454-05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ESCRIPTION OF THE PARTY OF THE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KO PEAF	IR T가맹점사업자의NAG 배우자, 직계가족	ENCY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친절도(5항목)	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품질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복장과 용모(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복장 및 용모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회계관리(1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별	본부 관리팀	
종업원 근무성적 평가(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근무성적평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부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아고고정거리조정원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ATION AGENCY

당사는 [EYESAVER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E 12 E 1	1—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 율/분담한도 등을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결정(광고의 경우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70% 이상 동의)	
판촉 행사	전국단위 공동판촉 행사	팜플렛. 카달로그 제작비용 100%	상품의 할인비용이 나 제공하는 경품 · 기념품 등의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별 매출액은 당사가 집계한 원·부자재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그 비율에 따라 최종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EYESAVER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맛 가맹 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승인한 필수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 벌로 금삼백만원(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EYESAVER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 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 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5)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A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위약벌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7일 내외	[9~1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3~42(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1	
가맹금 예치	- 본부 계좌로 입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	D-40(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8(2일)	
인테리어 공사 (간판설치비)	- 공사 실시 KOREA FAIR TRADE MEDIATION	D-37~8(30일) AGENCY	
필수설비	- 검안세트 등	D-9~5(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5(5일)	
초도상품	- 초도상품, 기타개점 비용	D-7~3(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刊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시ㅂ겓사	제외사유	고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비용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	ㅇ인테리어 공	또는 이전을	비용 청구(공사	일로부터 3년	
어 등의 노후	사비용(장비·	수반하지 않	계약서 등 공사	이내에 가맹	
화가 객관적	집기의 교체	는 점포환경	비용을 증빙할	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	비용을 🍑 제외	개선 : 20%	수 있는 서류 침	없는 사유로	
는 경우	한 실내건축	O 점포의 ME확장	부) → 90일 이 N 나에 ^{NC} 가맹본부	계약이 종료	
ㅇ위생이나 안	공사에 소요	또는 이전을	부담액을 가맹점	(계약의 해지·	
전의 결함으	되는 일체의	수반하는 점	사업자에게 지급	영업양도 포	
로 인하여 가	비용. 단, 가맹	포환경개선 :	(단, 가맹본부와	함)되는 경우	
맹사업의 통	사업의 통일	40%	가맹점사업자간	가맹본부 부	
일성을 유지	성과 무관하		별도의 합의가 있	담액 중 잔여	
하기 어렵거	게 가맹점사		는 경우 1년의 범	기간에 비례	
나 정상적인	업자가 추가		위내에서 분할지	하는 부담액	
영업에 현저	공사를 실시		급 가능)	은 지급하지	
한 지장을 주	함에 따라 소		○가맹점사업자가	아니하거나	
는 경우	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또는	이미 지급한	
	은 제외)		가맹본부가 지	경우에는 환	
	,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수 가능	
			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0 1 0 7 7 70/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1.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독창성유지에 대한 지도. 2.고객서비스, 영업 방식, 매뉴얼이나 상품의 사용 등에 관한 지도. 3.신규고객 창출 및 영업 활성화 방법에 대한지도 등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 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 팀 062)454-0 50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 시 기간등을 고려하여 실비 산정.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 팀 062)454-0 5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EYESAVER]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VIP매뉴얼 (가맹점역량강화 프로그램)	매출부진 가맹점 컨설팅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신규가맹점 지원	신규 오픈매장 물품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오픈물품지원	
	공동구매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콘택트렌즈,안경 렌즈,안경테 공동구매할일	
	제작비 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특가존POSM,전 단지,약력,만국기 ,에어간판,배너, 엠블럼현판, 제작지원	
가맹점을 위한 상생지원	로열티 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 <mark>한</mark>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	
	매출부진 매장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기간	_	
	우수가맹점 노하우공유AF 강의비 및 마케팅 지원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 모든 가맹점사업자	기맹계약기간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EYESAVER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フ	한	비고
시그 코 이	실기교육	실습교육	가맹본부교육	3일(8시간)	可入 司 0
신규 교육	마케팅, 상품교육, 서비스 교육	집단강의	매장현장교육	2일(8시간)	필수 교육
정기 교육	경영자컨설팅,마케팅,제품 교육,영국식검안법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본부고	교육장	월1회
재교육	가맹점 사업자 재교육(보수교육)	집단강의	재교육 사유 1개월 이내		해당 가맹점사업자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EYESAVER]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申ュ
) 긴	되고시신	부가세포함)	H 177
신규 교육	5일 👉 🔭	7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1일 8시간 교육기준)
정규 교육	1일(5시간) _{RFA}	FAIR TRABEMEDIATION	N AGENCY 월1회
재교육	1일(8시간)	실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교육을 소 집(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 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2조 따라 기한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46조 제1항의 1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근 조정의 비고
해당	없음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62)454-0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보공개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가맹점 내역

